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416
----------	-----

제출년월일 : 2019년 2월 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시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시민 민주주의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시민민주주의 기본 원칙(안 제3조)

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설치(안 제7조)

다.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소관사무(안 제8조)

라. 서울특별시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시민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지원 등(안 제16조부터 제1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19. 1. 10. ~ 1. 21.) 결과: 별도 첨부

(2) 비용추계서: 별도 첨부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 참여를 촉진 하고 정책추진에서 민관 협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 나. 90일 이상 시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다.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
2. “시민민주주의”란 시민, 이해당사자, 분야별 전문가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이 정책과 관련된 시의 의사결정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정운영 체계를 말한다.
3. “민관 협치”란 시와 시민 등이 정책의 입안·시행·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등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4. “공론”이란 시민이 시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민민주주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현하여야 한다.

1.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참여하는 시민 등에게 정책참여의 실질적 기회와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시민민주주의 실현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시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3. 시민민주주의 실현은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시의 정책 제안·심의·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시민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참여하는 시민 등에게 법령의 범위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제7조(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서울민주주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 소속으로 설치한다.

제8조(사무기구 및 소속 직원) ① 위원회 산하에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을 두며, 그 조직과 정원에 대하여는 각각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② 사무기구에서는 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민주주의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시민참여의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숙의·공론 과정의 종합적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과 집행, 평가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숙의에 관한 사항
4. 민관 협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5. 시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조성 및 주민자치 관련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장이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고,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시의원 2명 이내
2.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예산, 협치, 혁신 등 소관 실·본부·국장 또는 기획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심의·조정 등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조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조정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해외체류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운영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운영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무기구 중 회의에 상정된 의안의 소관 부서장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회의결과는 요약하여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3장 시민민주주의 확산등

제19조(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시민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민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시정 여건의 진단·평가
2.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정책의 기본구상
3. 시민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목표와 추진계획
4.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밖에 시민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정책 추진과 민관 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및 반환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협약) 시장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제도 진단 및 개선) 시장은 민관간 신뢰와 협력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행정절차와 제도를 마련·개선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는 폐지한다.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제5조제2항 관련)		
조 문	제 출 의 건	조치 및 보완 내용
<p><b>제20조(행정적·재정적 지원)</b></p> <p>①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정책 추진과 지역사회 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b>자치구 협치 회의, 주민자치회 등을 중심으로</b>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및 반환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b>【지원 방식 개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민주주의의 지속적·연속적 지원을 위해 단년도가 아닌 장기적 연속적 사업지원 필요함.</li> <li>• 시민 또는 시민사회에 대한 직접 지원에 대한 부분 명시되어야 함. (도봉구 지속가능정책담당관)</li> </ul> <p><b>【지역사회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협치회의, 주민자치회 등을 중심으로’를 ‘시, 구, 동 단위의 행정 또는 민간에게’로 수정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서울협치협의회 위원 송문식)</li> </ul>	<p>○ <b>수정반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협치 회의, 주민자치회는 일부 자치구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치구 협치회의, 주민자치회 등을 중심으로’를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로 범위를 확대는 것으로 수정 반영 단, 개인의 경우, 기능이 한정되어 있는 단체와는 달리 그 대상이나 활동 등 예측이 어렵고, 책임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시민(개인)’을 지원 대상으로 할 수는 없음.</li> </ul> <p>〈수정안〉</p> <p>①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정책 추진과 지역사회 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b>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b>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b>제21조(협약)</b> 시장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b>【협약 내용 구체화 및 변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이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모호함. 협약을 통한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어려우므로 내용을 구체화 하거나 변경이 필요 (도봉구 지속가능정책담당관)</li> </ul>	<p>○ <b>미반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의 성격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며, 기본 조례에서 내용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상황에 따라 기본 계획에 담는 것이 타당함.</li> </ul>
<p><b>부칙</b></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는 폐지한다.</p>	<p><b>【민관협치활성화 조례 폐지 반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협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음.</li> <li>• 자치구의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부속조례로 준치 할 필요가 있음.</li> </ul>	<p>○ <b>미반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협치활성화기본조례’의 기본 방향과 상당 부분은 본 조례가 수렴, 계승하였으므로 두 조례를 모두 존치시키기는 어려우며, 협치 조례를 근거로 하던 사업, 정책 등은 시민민주주의 조례를 근거로 지속 가능할 것임.</li> </ul>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 제13조(서울민주주의위원회 회의) : 회의 수당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 향후 5년(2019년~2023년)
  - 회의 참석수당
    - 우리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상 위원회 참석 수당 기준
    - 회의는 매월 1~2회 개최 기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위원회 수당	72,000	72,000	72,000	72,000	72,000	360,000

4. 재원조달 방안 : 해당 없음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조수진 (2133-6313)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분	산출내역
서울 민주주의 위원회 운영	○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신설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형 직위인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회 구성</li> <li>- 회의는 매월 1회 정례회 개최 및 필요시 추가 개최</li> </ul> ○ 예산소요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수당 : 위원 14명 × 150천원 × 20회 = 42,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은 인건비(시 포괄예산)에서 지급</li> </ul> </li> <li>- 검토수당 : 위원 14명 × 100천원 × 20회 = 28,000천원</li> <li>- 자료인쇄비 등 100천원 × 20회 = 2,000천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총 72,000천원 소요</b></p>